

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(제2조 관련)

항목	기준
목적	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함
범위	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관계법에 규정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 관련 사항
전자문서의 도달일	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(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)
전자문서 송달장소	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
자료의 전송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고지서 등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함